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기본계획에 ‘인권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항목에 인권보호 현황을 명시함(안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2항제5호).
- 농어업경영체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때 표준 계절근로 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계절근로자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4조의2 신설).

II. 검토의견

- 개정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향후 해당 법률안과 함께 심사·의결될 필요가 있음.
- 안 제10조의2제1항의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같은 조 제5항에서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제1항에서 관련 문구를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다음, 안 제14조의2제1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어업경영체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 고용한 자로 한정하고 있으나, '농어업경영체'¹⁾의 범위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소 규모 자영 농어업인이나 개인 농어업 종사자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고용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수범자의 범위는 구체적인 주체를 나열하기보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로 일원화하여 실질적인 고용 관계를 기준으로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아울러 제3항부터 '농어업경영체등'이라는 용어가 반복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제1항에서 규정한 정의와 부합하지 않거나 실제 행위 범위 또는 책임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로 용어를 정비하여 실질적 의무의 주체에게만 책임이 부과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다음, 안 제14조의2제3항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등 일정한 행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대행'의 범위와 법적 성격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특히, 근로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를 공공기관이 대신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법적 책임의 주체나 효력의 귀속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운영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은 계약서 작성 지원 등 행정적 지원에 가까운 업무로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를 ‘근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로 수정하여 ‘대행’의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14조의2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차별 금지, 계약서 작성, 보험 가입, 귀국조치 등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의무는 원칙적으로 근로 계약 체결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할 경우 법적 혼란이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 조항이 이 법 시행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부터 적용되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 규정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들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개 정 안	수 정 의 건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u>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u>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경영체 및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농어업경영체등”이라 한다)은</u>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u>농어업경영체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려면</u>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	제10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의 공공성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 주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u>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기관(이하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이라 한다)으로</u>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① <u>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u> 외국인 계절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u>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u>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계절근로계약서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절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u>농어업경영체등은</u> 제2항에 따른 <u>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u>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u>농어업경영체등은</u>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⑥ (생략) ⑦ <u>농어업경영체등은</u>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간의 만료 등으로	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u>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u> 제2항에 따른 <u>근로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절차를</u> 시·군·구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u>자</u>는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에 대비한 보증보험.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⑥ (개정안과 같음) ⑦ <u>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자</u>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종료, 체류기

개 정 안	수 정 의 견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보증보험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가입 의무는 이 법 시행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간의 만료 등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귀국하기 전에 임금 등 금품관계를 청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조(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전문위원 김 성 완)